noinboho.or.kr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CONTENTS

Part 0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 1

Part 02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5

Part 0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16~2020년) 15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 17
-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 ····· 18
- 연도별 학대사례 판정 건수 ····· 19
- 연도별 일반사례 건수 ····· 20
- 연도별 재학대 건수 ····· 21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22
-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24
- 연도별 학대 사례판정 현황 ····· 25
-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 26
-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 27
-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 28
-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 29
- 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 30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31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32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33
-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35

Part 04 제언(전문가 분석) 37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

발간목적

- 본 보고서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유형,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각각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 최근 5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방향과 노인보호 정책마련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17개 광역 시·도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4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06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기록된 노인학대 사례 및 교육·홍보 활동 자료를 분석하였음

자료수집 과정

- 본 자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노인학대 현황으로서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집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자료임

자료분석

-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음.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요내용

- 전국 3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집계된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서 파악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분 류	내 용
연도별 실적	• 신고접수 건수 • 학대사례판정 건수 • 일반사례 건수 • 재학대 건수 • 신고자 유형 • 학대발생장소 • 사례판정 현황 • 학대유형 건수 • 전체상담 횟수 • 일반상담 횟수 • 학대상담 횟수 • 사후관리 횟수 •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학대행위자 연령대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노인학대 신고 접수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로 당해 연도(2020년) 외에 과년도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학대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에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생활시설 학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이용시설 학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병원 학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 병원(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공공장소 학대

-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현장조사

-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방문을 의미함

사례판정

학대사례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일반사례

-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 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시키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학대상담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일반상담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안내 등의 문의 및 노인학대 의심사례로 접수되었으나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상담을 의미함

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복지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법률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지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의료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적 치료를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용어정리

학대행위자

-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부양의무자

-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있는 자로 노인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됨

보호자

- 노인을 보호자는 자로 부양의무자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노인독거가구

- 다른 가구원 없이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

노인부부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

자녀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손자녀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형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16~2020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16~2020년)

▸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 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표 1]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단위: 개소,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0	31	33	35	35	38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포함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

-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노인학대로 판정된 학대사례와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례판정 이후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2020년 노인학대 전체사례 건수는 16,973건으로 2019년 대비 **약 5.6% 증가(16,071건 ➜ 16,973건)** 하였음

[표 2]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증감률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사례	12,009	13,309	15,482	16,071	16,973
증감률	-	10.8	16.3	3.8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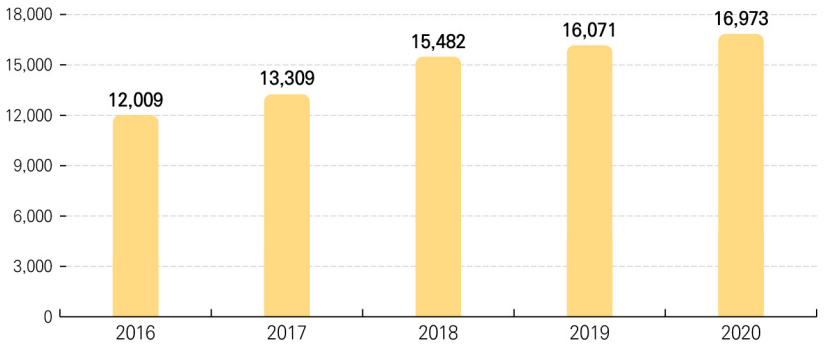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추이

연도별 학대사례 판정 건수

- **학대사례**[1]의 경우 전체사례의 30~40% 수준이며 2019년 대비 **약 19.4% 증가(5,243건 ➜ 6,259건)** 하였음

[표 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학대사례)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학대사례	4,280	4,622	5,188	5,243	6,259
	35.6	34.7	33.5	32.6	36.9
증감률	-	8.0	12.2	1.1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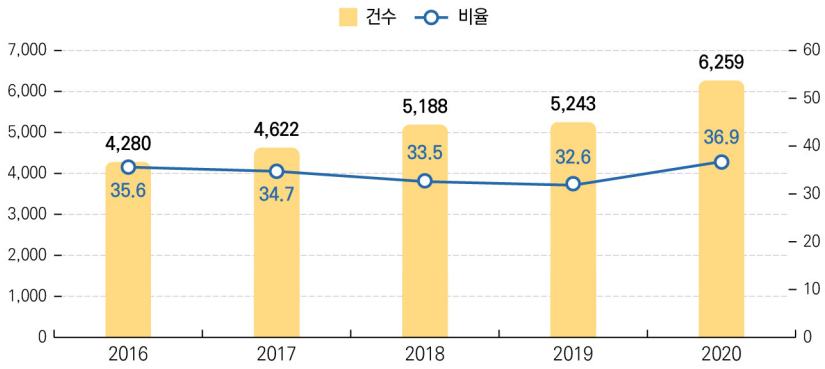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학대사례)

1)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사례를 말함

연도별 일반사례 건수

- **일반사례**[2]는 전체사례의 60~70% 수준이며 2019년 대비 **약 1.1% 감소 (10,828건 ➜ 10,714건)** 하였음

[표 4]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일반사례)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사례	7,729	8,687	10,294	10,828	10,714
	64.4	65.3	66.5	67.4	63.1
증감률	-	12.4	18.5	5.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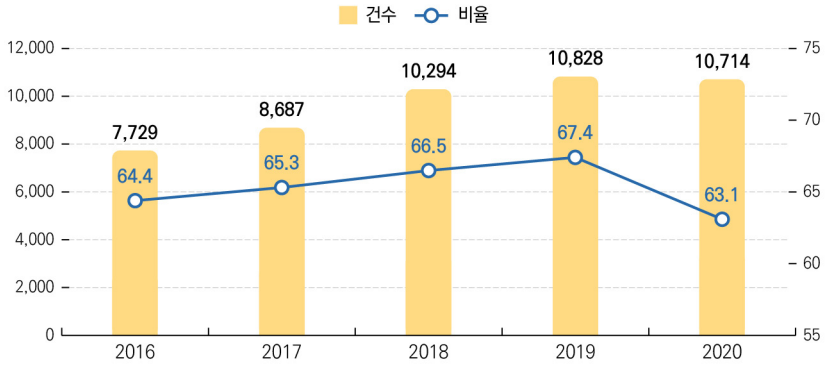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일반사례)

2) 일반사례는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로 판정된 것을 말함

연도별 재학대 건수

- 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대비 **약 22.8% 증가(500건 ➜ 614건)** 하였음

[표 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학대사례 건수		4,280	4,622	5,188	5,243	6,259
재학대	건수	249	359	488	500	614
	비율	5.8	7.8	9.4	9.5	9.8
증감률		8.7	44.2	35.9	2.5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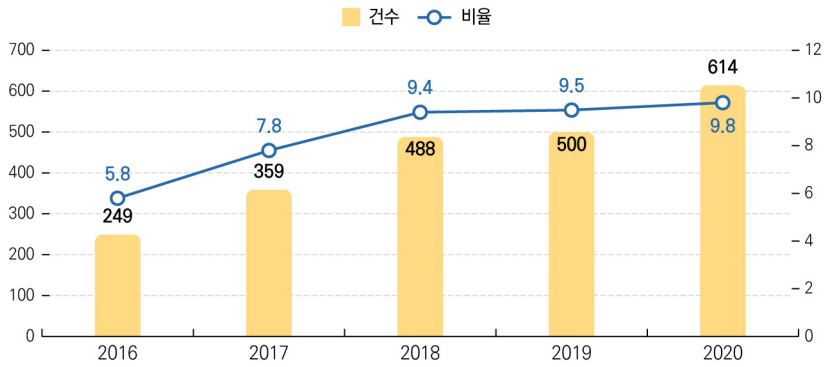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연도별 신고자 유형

- 2020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2019년 대비 **약 7.1% 증가 (877건 ➜ 939건)** 하였음
- 2020년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85.0%이고, "학대피해노인 본인"(450건, 7.2%)과 "친족"(531건, 8.5%), "관련기관"(4,117건, 65.8%)의 신고비율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타인"(216건, 3.5%)의 신고 비율은 감소함.

[표 6]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7	20	26	24	35
		0.6	0.4	0.5	0.5	0.6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9	12	21	20
		-	0.2	0.2	0.4	0.3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68	153	194	225	267
		3.9	3.3	3.7	4.3	4.3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사람	2	2	1	3	4
		0.0	0.0	0.0	0.1	0.1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79	105	72	83	92
		1.8	2.3	1.4	1.6	1.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82	283	398	375	246
		8.9	6.1	7.7	7.2	3.9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44	18	12	17	25
		1.0	0.4	0.2	0.3	0.4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45	34	29	24	116
		1.1	0.7	0.6	0.5	1.9
	119 구급대의 구급대원	3	5	2	2	5
		0.1	0.1	0.0	0.0	0.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1	2	-	-	-
		0.0	0.0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1	1	-
		-	-	0.0	0.0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4	5	9	5
		-	0.1	0.1	0.2	0.1
	응급구조사	-	-	-	-	1
		-	-	-	-	0.0
	의료기사	-	-	-	-	-
		-	-	-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	-	5	66	89
		-	-	0.1	1.3	1.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	5	9	8
		-	-	0.1	0.2	0.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	5	18	26
		-	-	0.1	0.3	0.4
	소계	751	635	767	877	939
		17.5	13.7	14.8	16.7	15.0
비신고의무자	학대피해노인본인	582	431	387	358	450
		13.6	9.3	7.5	6.8	7.2
	학대행위자본인	4	6	4	5	6
		0.1	0.1	0.1	0.1	0.1
	친족	500	407	472	386	531
		11.7	8.8	9.1	7.4	8.5
	타인	236	755	156	259	216
		5.5	16.3	3.0	4.9	3.5
	관련기관[3]	2,207	2,388	3,402	3,358	4,117
		51.6	51.7	65.6	64.0	65.8
	소계	3,529	3,987	4,421	4,366	5,320
		82.5	86.3	85.2	83.3	85.0
계		4,280	4,622	5,188	5,243	6,259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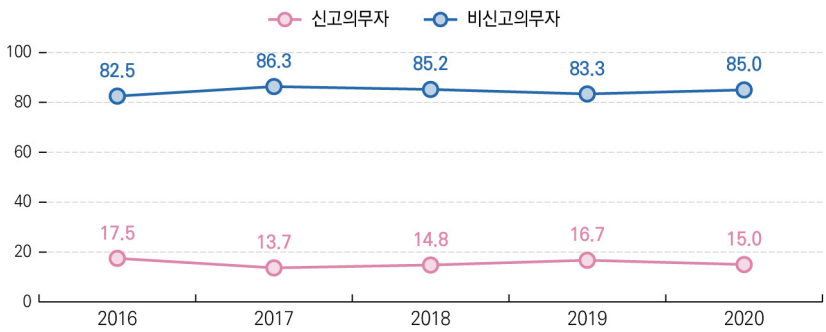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3)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포함됨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가정 내 학대의 경우 2020년 **5,505건(88.0%)**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생활시설 학대의 경우 2019년 대비 **7.2% 증가(486건 ➜ 521건)**하였으며, 이용시설 학대의 경우 2019년 대비 **29.8% 감소(131건 ➜ 92건) 하였음.**

[표 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가정내	3,799	4,129	4,616	4,450	5,505
	88.8	89.3	89.0	84.9	88.0
생활시설	238	327	380	486	521
	5.6	7.1	7.3	9.3	8.3
이용시설	16	16	41	131	92
	0.4	0.3	0.8	2.5	1.5
병원	24	27	65	45	37
	0.6	0.6	1.3	0.9	0.6
공공장소	94	58	42	60	39
	2.2	1.3	0.8	1.1	0.6
기타	109	65	44	71	65
	2.5	1.4	0.8	1.4	1.0
계	4,280	4,622	5,188	5,243	6,259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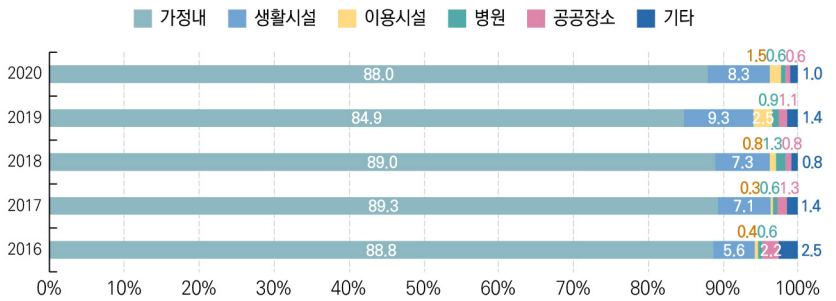

[그림 6]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연도별 학대 사례판정 현황

-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판정 유형을 살펴보면 **응급 사례 2.6%(165건), 비응급 62.7%(3,923건), 잠재 34.7%(2,171건)으로 2019년 대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응급	159	165	105	104	165
	3.7	3.6	2.0	2.0	2.6
비응급	2,472	2,803	3,221	3,322	3,923
	57.8	60.6	62.1	63.4	62.7
잠재	1,649	1,654	1,862	1,817	2,171
	38.5	35.8	35.9	34.7	34.7
계	4,280	4,622	5,188	5,243	6,259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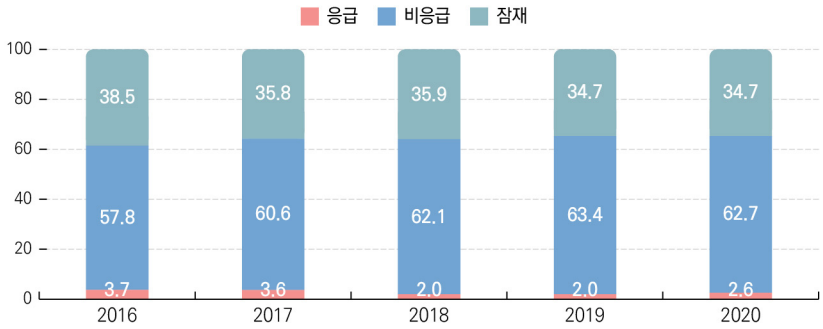

[그림 7]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 노인학대는 여러 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보통 "**정서적 - 신체적 - 방임**" 학대유형의 순으로 나타남
  - *** 학대유형건수('20) : 정서적 학대 4,188건(42.7%), 신체적 학대 3,917건 (40.0%), 방임 760건(7.8%), 경제적 학대 431건(4.4%), 성적학대 231건(2.4%), 자기방임 223건(2.3%), 유기 53건(0.5%)의 순**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형은 2019년 대비 크게 증가
  - *** 신체적 학대 증가율: 24.8% (3,138건➜3,917건)**
  - **** 정서적 학대 증가율: 20.9% (3,465건➜4,188건)**

[표 9]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체적 학대	2,132	2,651	3,046	3,138	3,917
	31.3	36.4	37.3	38.1	40.0
정서적 학대	2,730	3,064	3,508	3,465	4,188
	40.1	42.0	42.9	42.1	42.7
성적 학대	91	150	228	218	231
	1.3	2.1	2.8	2.6	2.4
경제적 학대	491	411	381	426	431
	7.2	5.6	4.7	5.2	4.4
방임	778	649	718	741	760
	11.4	8.9	8.8	9.0	7.8
자기방임	523	291	240	200	223
	7.7	4.0	2.9	2.4	2.3
유기	66	71	55	41	53
	1.0	1.0	0.7	0.5	0.5
계	6,811	7,287	8,176	8,229	9,803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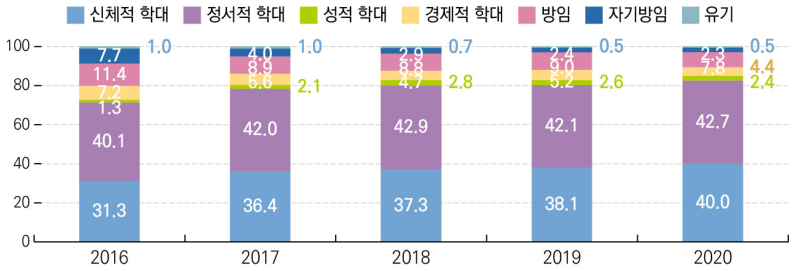

[그림 8] 연도별 학대 유형 비율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 전체상담 횟수는 일반상담과 학대상담을 합한 것으로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 **일반상담**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노인학대와는 관련 없는 노인문제로서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 전체상담 횟수는 2019년 대비 **약 30.3% 증가(140,354회 ➜ 182,849회)** 하였으며, 전체 신고접수 건수(16,973건) 한 사례당 10.8회 상담을 실시하였음

[표 10]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및 증감률

(단위: 회,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상담	98,932	111,245	127,965	140,354	182,849
증감률	-	12.4	15.0	9.7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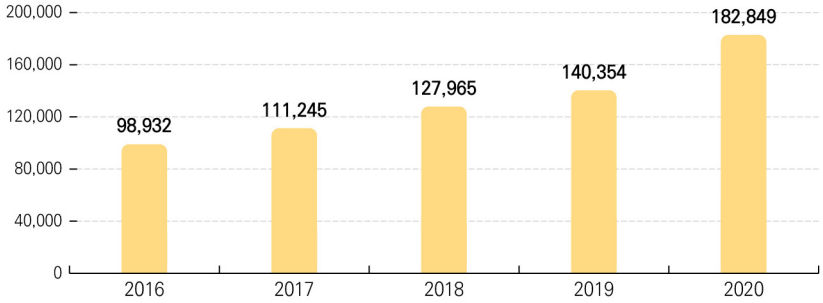

[그림 9]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추이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 일반상담의 경우 2019년 대비 **약 6.2% 증가(30,128회 ➜ 32,003회)** 하였으며, 전체상담 횟수의 17.5%의 비율을 보임
  - 전체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약 3회 상담을 실시하였음

[표 11]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상담	16,464	22,326	25,793	30,128	32,003
	16.6	20.1	20.2	21.5	17.5
증감률	-	35.6	15.5	16.8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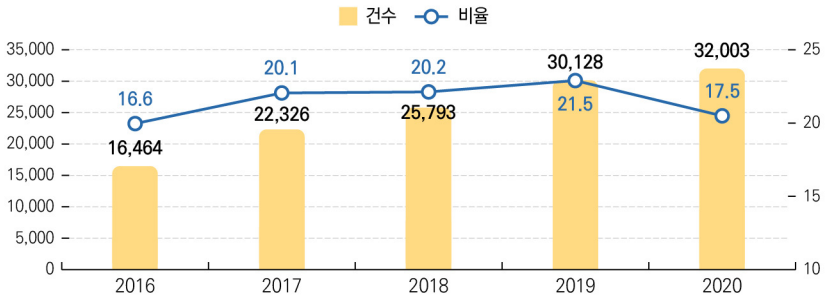

[그림 10]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및 비율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 학대상담의 경우 2019년 대비 **약 36.9% 증가(110,226회 ➜ 150,846회)** 하였으며, 전체상담 횟수의 82.5%를 차지함
  - 전체 학대사례 건수 한 사례당 약 24.1회 상담을 실시하였음

[표 12]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학대상담	82,468	88,919	102,172	110,226	150,846
	83.4	79.9	79.8	78.5	82.5
증감률	-	7.8	14.9	7.9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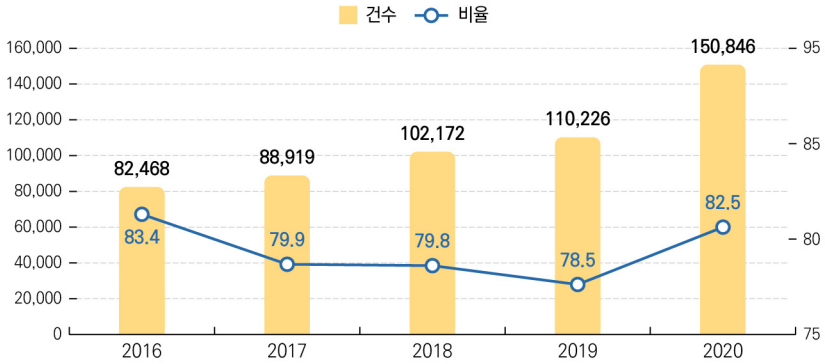

[그림 11]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및 비율

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019년 대비 **약 32.7% 증가 (18,135회 ➜ 24,057회)** 하였음

[표 13] 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및 증감률

(단위: 회,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사례	12,946	11,759	13,243	18,135	24,057
증감률	-	-9.2	12.6	36.9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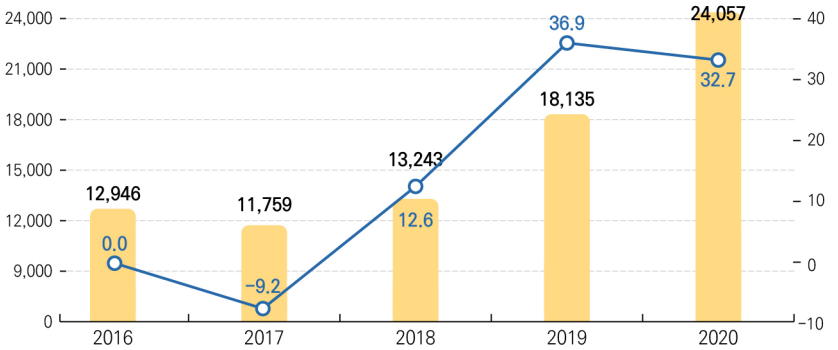

[그림 12] 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추이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노인독거[4]가구**는 2016년부터 **감소 경향**을 보인 반면, **노인부부는** 2019년 대비 22.6% **증가(1,669건 ➜ 2,046건) 자녀동거 가구는 29.7%(1,588건 ➜ 2,060건) 증가함**

[표 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노인독거	1,140	1,007	999	1,039	1,073
	26.6	21.8	19.3	19.8	17.1
노인부부	1,023	1,216	1,512	1,669	2,046
	23.9	26.3	29.1	31.8	32.7
자녀동거	1,328	1,536	1,738	1,588	2,060
	31.0	33.2	33.5	30.3	32.9
손자녀동거	154	178	187	182	199
	3.6	3.9	3.6	3.5	3.2
자녀·손자녀동거	234	245	252	195	253
	5.5	5.3	4.9	3.7	4.0
기타	401	440	500	570	628
	9.4	9.5	9.6	10.9	10.0
계	4,280	4,622	5,188	5,243	6,259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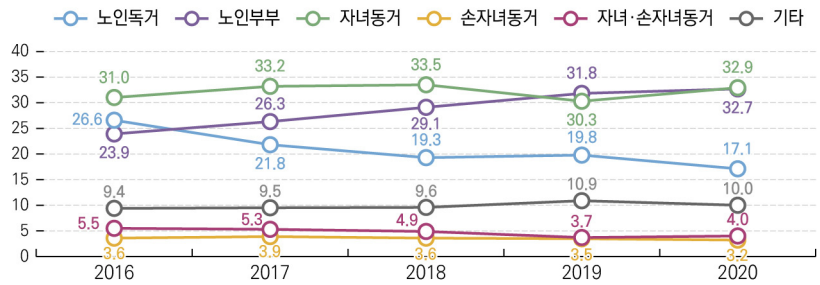

[그림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4) '노인독거가구'라 함은 노인 혼자 사는 가구를 의미함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대피해 노인의 **"아들"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배우자" 유형이 2순위로 증가하여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학대행위자 유형('20년) :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 배우자 비율 추이 : 27.5%('18년) ➜ 30.3%('19년) ➜ 31.7%('20년)**

[표 15]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본인	522	290	240	200	221
	11.3	5.7	4.2	3.5	3.3
배우자	952	1,263	1,557	1,749	2,120
	20.5	24.8	27.5	30.3	31.7
아들	1,729	1,913	2,106	1,803	2,288
	37.3	37.5	37.2	31.2	34.2
며느리	157	131	143	109	123
	3.4	2.6	2.5	1.9	1.8
딸	475	424	436	438	589
	10.2	8.3	7.7	7.6	8.8
사위	23	27	34	27	28
	0.5	0.5	0.6	0.5	0.4
손자녀	103	124	134	112	168
	2.2	2.4	2.4	1.9	2.5
친척	63	49	59	50	64
	1.4	1.0	1.0	0.9	1.0
타인	221	176	168	222	223
	4.8	3.5	3.0	3.8	3.3
기관	392	704	788	1,067	874
	8.5	13.8	13.9	18.5	13.0
계	4,637	5,101	5,665	5,777	6,698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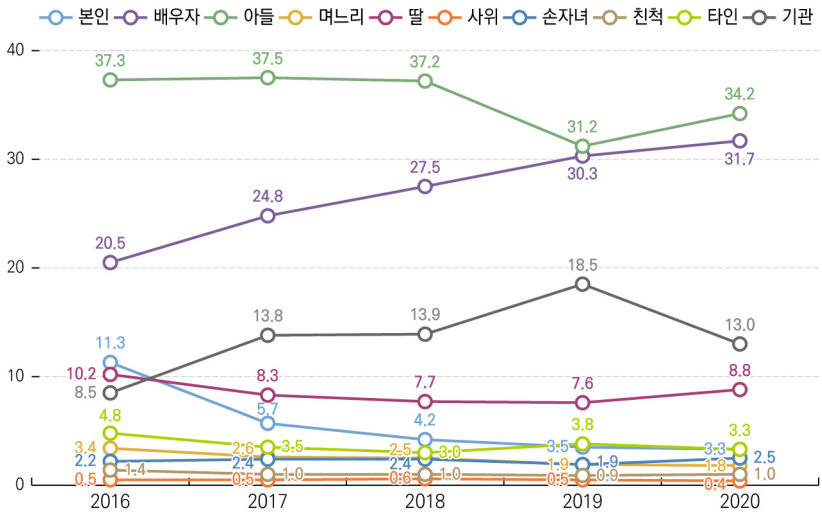

[그림 14]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는 70대가 최근 5년간 45% 내외의 수치를 보이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80대가 30.5%, 60대가 19.8%, 90대가 6.0%, 100세 이상이 0.2%의 순으로 나타남

[표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9세 이하	5	4	-	-	-
	0.1	0.1	-	-	-
60~64세	213	141	-	-	-
	5.0	3.1	-	-	-
65~69세	589	740	819	919	1,240
	13.8	16.0	15.8	7.5	19.8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0~74세	852	969	1,193	1,189	1,385
	19.9	21.0	23.0	22.7	22.1
75~79세	978	1,071	1,250	1,157	1,339
	22.9	23.2	24.1	22.1	21.4
80~84세	881	900	1,020	1,031	1,218
	20.6	19.5	19.7	19.7	19.5
85~89세	499	525	588	586	690
	11.7	11.4	11.3	11.2	11.0
90~94세	206	204	245	289	283
	4.8	4.4	4.7	5.5	4.5
95~99세	53	58	61	63	92
	1.2	1.3	1.2	1.2	1.5
100세 이상	4	10	12	9	12
	0.1	0.2	0.2	0.2	0.2
계	4,280	4,622	5,188	5,243	6,259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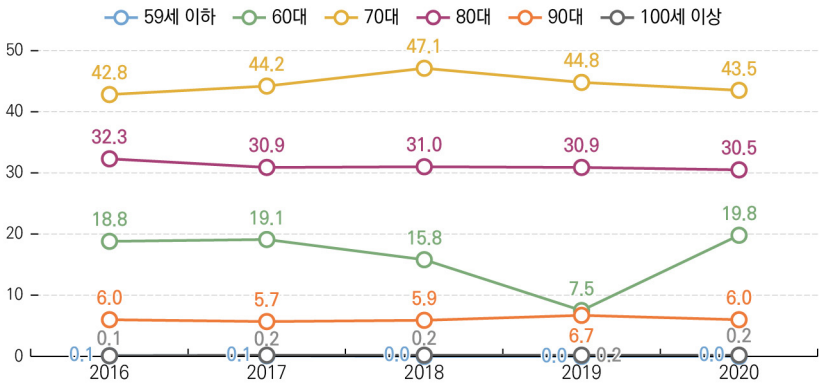

[그림 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2020년 학대행위자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2,034명(30.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50대가 1,634명(24.4%), 40대가 1,352명(20.2%)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부터는 **70세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전체 학대행위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학대행위자의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9년 대비 15.6% 증가**(1,759건 ➜ 2,034건)**

[표 17]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19세	33	46	50	42	62
	0.7	0.9	0.9	0.7	0.9
20~29세	76	115	105	81	117
	1.6	2.3	1.9	1.4	1.7
30~39세	296	325	318	306	389
	6.4	6.4	5.6	5.3	5.8
40~49세	1,040	1,150	1,253	1,184	1,352
	22.4	22.5	22.1	20.5	20.2
50~59세	1,166	1,275	1,414	1,465	1,634
	25.1	25.0	25.0	25.4	24.4
60~69세	687	827	824	940	1,110
	14.8	16.2	14.5	16.3	16.6
70세 이상	1,339	1,363	1,701	1,759	2,034
	28.9	26.7	30.0	30.4	30.4
계	4,637	5,101	5,665	5,777	6,698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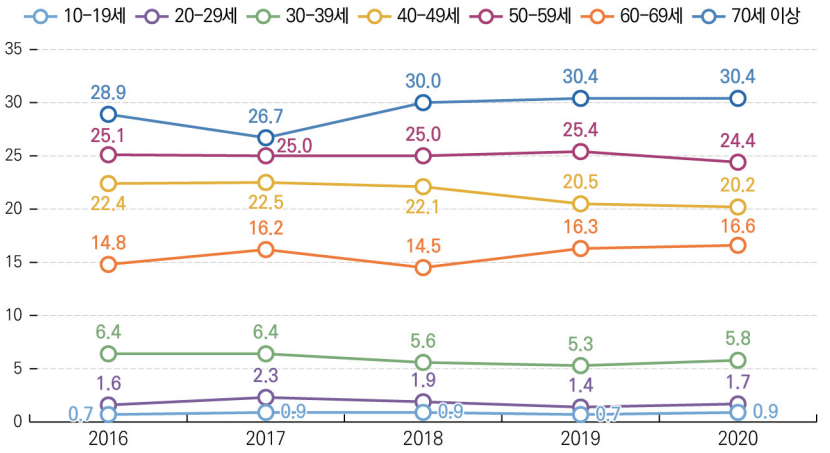

[그림 16]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제언
(전문가 분석)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제언(전문가 분석)

▸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노인학대 발생 원인 분석

노인학대 판정건수 증가

-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5,243건→6,259건, **19.4% 증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우울장애, 스트레스 및 가족갈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18~)**,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인학대예방 나비캠페인 실시('19~),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확충** 등으로 인해 인식수준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노인학대 판정건수 추이 : ('16년) 4,280건 → ('17년) 4,622건 → ('18년) 5,188건 → ('19년) 5,243건 → ('20년) 6,259건

가정 및 생활시설 학대 증가

- **가정내** 학대판정건수는 전년 대비 **23.7% 증가**('19년 4,450건 → '20년 5,505건), **생활시설 학대**는 **7.2% 증가**('19년 486건 → '20년 521건), **이용시설 학대는 29.8% 감소**('19년 131건 → '20년 92건)
  - **가정 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등 노인학대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출입 제한 등 외부 및 가족으로부터의 격리**, 돌봄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이용시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출입 제한 및 휴관 등**으로 노인학대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 가구 학대 증가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외부 출입이 제한**되면서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가구 등 학대행위자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노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전년대비 29.7% 증가**('19년 1,588건→'20년 2,060건)하였으며, **노인부부 가구는 22.6% 증가**('19년 1,669건→'20년 2,046건)
  - 또한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와 동거 중인 경우가 전년 대비 22.6% 증가('19년 3,584건→'20년 4,359건)하였음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인 쇄 일 : 2021년 6월
발 행 일 : 2021년 6월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편집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 3667-1389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